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58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원이 · 박홍배 · 윤준병
허성무 · 장철민 · 서삼석
이연주 · 송재봉 · 김한규
이용선 · 고민정 · 오세희
서미화 · 조계원 · 서영교
백혜련 · 이재관 의원
(17인)

제안이유

기술보증기금은 설립 이후 기술보증뿐만 아니라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보호, 인수·합병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금융지원과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은 기술보증을 통한 자금공급을 중심으로 목적과 업무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기술혁신 지원기능이 개별 업무로 규정되거나 그 근거가 다른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변화하는 기술환경과 정책 수요에 맞추어 이를 연계 및 일괄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원으로서 금융성기

금인 동시에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사업수행 주체로서 기관에 해당함. 이처럼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과 금융성기금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양자의 법적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 더불어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이 재원으로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타 공공기관들과 달리 기관에 기금을 설치하는 조항이 없고 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고유회계 없이 기술보증 지원 목적의 금융성기금 회계밖에 없어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데 많은 제도적 제약이 있음.

이에,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고 한국기술금융에 「국가재정법」상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기관과 기금의 법적 성격·역할 및 재원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함. 아울러 기관회계와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 회계를 구분하고 관련 재무·회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기술보증 재원의 건전성과 안정적인 보증공급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사업별 재원의 귀속과 기관 및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술보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이후 기술이전·사업화·보호 및 성장에 이르는 기술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혁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변경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변경하여 기관과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구분하며, 법률의 목적에 기술혁신 지원을 추가하고 기관의 설립 목적을 이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및 제12조 등).
- 나. 신기술사업자의 정의를 정비하고, 신기술사업, 기술혁신, 기술거래, 신기술사업투자,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등 기관의 주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 다. 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기관의 운영 및 임직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 라. 기관의 업무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술보증, 보증연계투자 등의 자금공급 업무와 기술평가, 기술보호, 기술신탁관리 등의 기술혁신 지원 업무로 구분하고, 기술거래 및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이 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정부 등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근거 및 업무방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8조 및 제29조).
- 마. 사업수행 주체인 기관의 회계와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기관의 자금조달, 예산·결산, 손익처리, 여유자금 운용 및 위탁업무 재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9조의2부터 제45조의2까지).
- 바. 한국기술금융에 금융성기금인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

금의 조성 재원,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관
과 기금의 법적·회계적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
조의9까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보증기금법”을 “한국기술금융법”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를 “한국기술금융을 설립하여”로, “자금의”를 “자금”으로,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기술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며 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2(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란”을 각각 “이란 한국기술금융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기술보증기금”을 각각 “한국기술금융”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술보증기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를 “제4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로, “출연”을 “제45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출연”으로, “조성한”을 “조성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중 “기술보증기금”을 각각 “한국기술금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기술사업”이란 기술, 지식재산 등과 관련된 연구, 개발, 개량,

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의2. “신기술사업자”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 “기술신탁관리”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13.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제품·서비스 및 그 생산·공급 방식 등을 혁신하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4. “기술평가”란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술평가정보사업”이란 기술평가를 함으로써 만들어진 정보(이하 “기술평가정보”라 한다)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등의 기술평가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기술거래”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7. “기술거래사업”이란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정보망의 구

축·운영 및 관리,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 기술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8. “신기술사업투자”란 한국기술금융이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9.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이란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알선, 중개, 자문,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3장의 제목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기금의 설립)”을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금융을 설립한다.

③ 한국기술금융은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법률 제21540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를 제45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의 제목 “(기본재산의 조성)”을 “(기금의 조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의 기본재산”을 “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4. 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의 제목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본점을”을 “주된 사무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을 “지사 또는 출장소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본재산”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금은 본점”을 “한국기술금융은 그 주된 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의”를 “한국기술금융의”로, “밖에 기금”을 “밖의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업무 운영”을 “관리·운용”으로, “기본 방침을 수립”을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로, “기금에”를 “한국기술금융에”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3명”을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의 이사장”을 “한국기술금융의 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2항제7호”를 “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운영위원회”를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로 한다.

1. 한국기술금융의 사장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업무방법서 중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부담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제1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금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를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과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이사회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이사장 1명, 전무이사”를 “사장 1명, 부사장”으로, “이사와”를 “상임이사, 8명 이내의 비상임 이사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원의 임면 및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제1항 중 “이사장은 기금”을 “사장은 한국기술금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부사장은 사장”으로, “이사장이”를 “사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을 “상임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로,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사장과 전무이사가”를 “사장과 부사장이”로, “이사장이”를 “사장이”로, “이사가 이사장”을 “상임이사가 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① 한국기술금융의 상임임원과 직원의 겸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의 제목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를 “(「형법」 적용

에서 공무원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26조 중 “이사장은 전무이사”를 “사장은 부사장”으로,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27조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이사장”을 “사장”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업무) ① 한국기술금융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

2.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기술보증

나. 신용보증

다. 보증연계투자

라. 구상권 행사

마. 중소기업팩토링

바. 재보증

사. 유동화회사보증

아. 신기술사업투자

3. 신기술사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정보사업

나. 중소기업 기술보호

다. 기술신탁관리

라. 기술거래사업

마.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

바. 기술평가제도 및 기술보증제도의 조사·연구·확산

사.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아.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자.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5. 다른 법령에서 한국기술금융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6. 이 법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② 한국기술금융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한국기술금융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중 “기금”을 각각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금”을 각각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의 보증연계투자자”를 “한국기술금융이 기금의 부담으로 하는 보증연계투자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이”를 “한국기술금융이 기금의 부담으로”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업무방법서) 한국기술금융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 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부담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술보증,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보증방법
 - 나. 보증기간
 - 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보증연계투자자에 관한 사항
4.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
6. 채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보증방법

나. 재보증기간

다. 재보증 제한업종

라. 그 밖에 재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7.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
동화자산의 최고한도

마. 그 밖에 유동화회사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8. 신기술사업투자에 관한 사항

9. 기술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에 관한 사항 및 기술평가
정보사업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11.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술거래사업에 관한 사항

13.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에 관한 사항

14. 기술평가제도 및 기술보증제도의 조사·연구·확산에 관한 사항

15.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6.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한국기술금융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제1항 중 “기금은 사업전망, 경영능력”을 “한국기술금융은 기술 사업역량, 사업화전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은”을 “한국 기술금융은 기금으로 부담하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기금의 보증채무부담”을 “한국기술금융이 기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보증채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이”를 “한국기술금융이 기금의 부담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대하여”를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신용도”를 “기술 사업의 타당성, 신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기금”을 각각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33조의2 중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제4호의2·제5호·제6호·제9호 및 제10호”를 “한국기술금융은 제28조”로 한다.

제34조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금”을 각각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

항 중 “기금”을 각각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금”을 각각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39조 중 “기금은”을 “한국기술금융은”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금의 조달) ① 정부는 한국기술금융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고, 제28조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제5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조 제2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

② 한국기술금융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0조를 제45조의6으로 하고,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회계처리의 구분) 한국기술금융은 한국기술금융의 회계, 기금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의6(종전의 제40조)의 제목 “(회계원칙)”을 “(기금의 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의 기본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41조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예산과 결산) 한국기술금융의 예산과 결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기술금융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제45조의8 및 제45조의9로 하고,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한국기술금융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45조의8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4호 중 “기금의 설치목적”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목적”으로 본다.

제45조(손익금의 처리) ① 한국기술금융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기술금융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45조의8(중전의 제44조)의 제목 “(여유금의 운용)”을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은 기금”으로, “여유금”을 “여유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설립”을 “설치”로 한다.

제45조의9(중전의 제45조)의 제목 “(결손보전)”을 “(기금의 결손보전)”으로 한다.

제45조의2 중 “기금은”을 “한국기술금융은 한국기술금융 및 기금의”로 한다.

제51조 앞의 “제5장 벌칙”을 “제6장 벌칙”으로 한다.

제46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한다.

제45조의2 다음에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기술보증기금

제4장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기술보증기금의 설치)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키고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금융에 기술보증기금을 설치한다.

제4장에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및 부대비용
2.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같은 항 제2호아목의 업무는 제외한다)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한국기술금융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한국기술금융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한국기술금융에 대한 출연

7.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4장에 제4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7(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한국기술금융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기술금융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본문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영”을 “기금”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기금의”를 “한국기술금융의”로, “기금, 기금”을 “한국기술금융, 한국기술금융”으로, “보고서”를 “보고서 등 자료”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금”을 각각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49조 중 “기금이”를 “한국기술금융이”로,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를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금의 이사장”을 “한국기술금융의 사장”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8조제1항제7호”를 “제28조제1항제2호라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를 “한국기술금융은 제28조제1항제3호아목”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여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8항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정관의 변경과 그 밖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 별표3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은 제45조의3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은 한국기술금융의 사장으로, 전무이사는 부사장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에 속하는 모든 재산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한국기술금융이 포괄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서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은 한국기술금융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기술금융이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의 명칭은 한국기술금융의 명칭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보증기금의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은 이 법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지사나 출장소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보증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②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한국기술금융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기술금융법」

별표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

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금융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⑧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

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한국기술금융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 한다.

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

⑪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이하 “한국기술금융”이라 한다)”으로 한다.

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6항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⑭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한국기술금융법」 제45조의4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⑮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⑯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
제22조의8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

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기술금융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금융의 사장

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

⑲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7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⑳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

㉒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㉓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한국기술금융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 한다.

㉔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기술금융법」 제45조의4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㉕ 법률 제21759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

㉖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을 “「한국기술금융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기술금

융의 사장”으로 한다.

㉗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기술금융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㉘ 법률 제2168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

㉙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㉚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㉛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이하 이 조에서 “한국기술금융”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3제6항 및 제7항 중 “기술보증기금”을 각각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를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기술금융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제2조제8호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한국기술금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을 “「한국기술금융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이하 “한국기술금융”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기술보증기금”을 각각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신용보증 업무”를 “「한국

기술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금융이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제2호가목의 기술보증 및 나목의 신용보증 업무”로 한다.

③④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③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이하 이 조에서 “한국기술금융”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제35조의8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2”를 “「한국기술금융법」 제28조의2”로 한다.

③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③⑦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

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으로 한다.

㉖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기술금융법」에 따른 한국기술금융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기술보증기금법</u>	<u>한국기술금융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u>기술보증기</u> <u>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u> <u>정착·발전시킴으로써</u> 신기술 사업에 대한 <u>자금의</u> 공급을 원 활하게 하고 <u>나아가 지역균형발</u> <u>전</u>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한국기술금</u> <u>융을 설립하여</u> ----- ----- ----- <u>자금</u> ----- ----- <u>기술혁신을 지원함으로</u> <u>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u> <u>성장을 촉진하며 지역</u>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신 설></u>	제2조(정의) ----- -----. 1. “신기술사업”이란 기술, 지식 <u>재산 등과 관련된 연구, 개발,</u> <u>개량, 제품화 또는 이를 응용</u> <u>하여 사업화하는 사업으로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u> <u>말한다.</u>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 <u>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u> <u>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u> <u>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u> <u>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u>	1의2. “신기술사업자”란 신기술 <u>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u>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3. (생 략)

4. “기술보증”이란 신기술사업
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
한다.

가.·나. (생 략)

5. “신용보증”이란 상시 사용하
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
의 금전채무를 보증(기술보증
은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
다.

가.·나. (생 략)

6. “재보증”이란 기술보증기금
이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원
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
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
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
를 보전(補填)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7. “채권자”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2.·3. (현행과 같음)

4. -----이란 한국기술금융
의 -----
-----.

가.·나. (현행과 같음)

5. -----이란 한국기술금융
의 -----

-----.

가.·나. (현행과 같음)

6. ----- 한국기술금융--

-----.

7. ----- 한국기술금융-----

말한다.

8. “기본재산”이란 기술보증기
금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
산을 말한다.

9.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술
보증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
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금
전채무를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
기금이 제28조의4제1항에 따
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
는 것을 말한다.

11.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기술
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매출
채권(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하고 취득한 채권을 말한다)
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
하고, 그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

는.

8. ----- 제4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기술보증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의 -----
----- 제45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출연 --- 조성된 -----.

9. ----- 한국기술
금융-----

-----.

10. ----- 한국기술
금융-----

-----.

11. ----- 한국기
술금융-----

-----.

는 업무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2. “기술신탁관리”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기
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13.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
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제품·서비스
및 그 생산·공급 방식 등을
혁신하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
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4. “기술평가”란 기술의 기술
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
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술평가정보사업”이란 기
술평가를 함으로써 만들어진
정보(이하 “기술평가정보”라
한다)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등의 기술
평가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16. “기술거래”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7. “기술거래사업”이란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 기술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신 설>

18. “신기술사업투자”란 한국기술금융이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다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9.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이란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

제3장 <u>기술보증기금</u> 제12조(기금의 설립) ① <u>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② <u>기금은 법인으로 한다.</u> <u><신 설></u> 법률 제21540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u>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u> 1. ~ 3. (생략) <u><신 설></u>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1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u>한 알선, 중개, 자문,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u> 제3장 <u>한국기술금융</u> 제12조(설립 등) ① <u>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금융을 설립한다.</u> ② <u>한국기술금융-----.</u> ③ <u>한국기술금융은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u> 법률 제21540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4(기금의 조성) ① <u>기금-----.</u> 1. ~ 3. (현행과 같음) 4. <u>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u> ② ----- ----- ----. <u><단서 삭제></u>
--	--

<u>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조 제4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u>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u>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u> ② <u>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u>	제14조(사무소) ① <u>한국기술금융-----</u> <u>주된 사무소를 -----.</u> ② <u>한국기술금융-----</u> <u>지사 또는 출장소를 -----.</u>
제15조(정관) ① <u>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	제15조(정관) ① <u>한국기술금융---이사회-----</u> <u>-----.</u>
② <u>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2. (생략) 3. <u>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u> 4. <u>기본재산에 관한 사항</u> 5. ~ 12. (생략)	② <u>한국기술금융-----</u> <u>-----.</u> 1.·2. (현행과 같음) 3. <u>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u> 4. <u>기술보증기금-----</u> 5. ~ 12. (현행과 같음)
제16조(등기) ① <u>기금은 본점의</u>	제16조(등기) ① <u>한국기술금융은</u>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기금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이사장

2. 3. (생략)

4.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생략)

6. 일반 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

그 주된 사무소-----
-----.

② ----- 한국기술금융의

밖의 한국기술금융-----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
-- 관리·운영 ---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한국기술금융에-----.

② -----
-----.

1. 한국기술금융의 사장

2. 3. (현행과 같음)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

5. (현행과 같음)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7. -----

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
하여 위촉하는 사람 3명

8. ~ 10. (생략)

③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
7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신설>

----- 4명

8. ~ 10. (현행과 같음)

③ ----- 한국기술금융의 사
장-----.

④ 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7호

-----.

⑤ 제2항제6호-----

--. -----

--.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업무방법서 중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
의 부담으로 수행하는 업무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

⑥ <u>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8조(이사회) ① <u>기금에 이사회를 둔다.</u> ② <u>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u> ③ <u>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u> ④ <u>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⑤ <u>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⑥ <u>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제19조(임원) <u>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u>	<u>하는 사항</u> ⑦ <u>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u> -. 제18조(이사회) ① <u>한국기술금융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금융---</u> ② ----- <u>사장, 부사장,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한다)-----.</u> ③ <u>이사회는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삭 제> <삭 제> <삭 제> 제19조(임원) ① <u>한국기술금융----- 사장 1명, 부사장 ---- 상임이사, 8명 이내의 비상</u>
---	--

다.

<신 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
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
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
를 감사(監査)한다.

제21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과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이사와-----

-.

② 임원의 임면 및 임기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한국기술금융-----
----.

② 부사장은 사장-----
사장이-----
-----.

③ 상임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 한국기술금융-----
--.

④ 사장과 부사장이 -----

----- 사장이-----
----- 상임이사가 사장-----
-----.

⑤ ---- 한국기술금융-----
-----.

<삭 제>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임명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
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24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기
금의 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임원·직원 및 그 직
(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삭 제>

제24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한
국기술금융의 상임임원과 직원
의 겸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한국기술금융-----

-.

제25조(「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u>기금</u> 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형법」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한국기술금융</u> ----- ----- ----- -----.
제26조(대리인의 선임) <u>이사장</u> 은 <u>전무이사</u> ·이사 또는 직원 중에 서 <u>기금</u> 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 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제26조(대리인의 선임) <u>사장</u> 은 부 <u>사장</u> ----- <u>한국기술금융</u> ----- ----- -----.
제27조(직원의 임면) <u>기금</u> 의 직원 은 <u>이사장</u> 이 임면(任免)한다.	제27조(직원의 임면) <u>한국기술금 용</u> --- <u>사장</u> -----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u>기금</u>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기본재산의 관리</u> 2. <u>기술보증</u> 3. <u>신용보증</u> 3의2. <u>보증연계투자</u> 4. <u>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 술지도</u> 4의2. <u>중소기업 기술보호</u> 4의3. <u>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 업을 말한다)</u>	제28조(업무) ① <u>한국기술금융</u> 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u>기금의 운용·관리</u> 2. <u>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 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u> <u>가. 기술보증</u> <u>나. 신용보증</u> <u>다. 보증연계투자</u> <u>라. 구상권 행사</u> <u>마. 중소기업팩토링</u> <u>바. 재보증</u>

<u>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u> <u>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u> <u>7. 구상권(求償權)행사</u> <u>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u> <u>9. 중소기업팩토링</u> <u>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u>	<u>사. 유동화회사보증</u> <u>아. 신기술사업투자</u> <u>3. 신기술사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u> <u>가.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정보사업</u> <u>나. 중소기업 기술보호</u> <u>다. 기술신탁관리</u> <u>라. 기술거래사업</u> <u>마. 기업의 인수·합병 지원</u> <u>바. 기술평가제도 및 기술보증제도의 조사·연구·확산</u> <u>사.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u> <u>아.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u> <u>자.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u> <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u> <u>5. 다른 법령에서 한국기술금융</u>
---	--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	<u>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u> 6. <u>이 법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u> ② 한국기술금융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한국기술금융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재보증) ① <u>한국기술금융</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u>한국기술금융</u>----- ----- ----- -----. ④ -----
--	---

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填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
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
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
로 한다.

⑤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
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
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① 기
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
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

한국기술금융

⑤

한국기술금융

⑥ (현행과 같음)

⑦ 한
국기술금융

제28조의3(유동화회사보증) ① 한
국기술금융

다.

1. · 2. (생략)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

1. · 2. (현행과 같음)

② 한국기술금융-----

-----.

③ 한국기술금융-----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한국기술금융-----

-----.

② 한국기술금융이 기금의 부담으로 하는 보증연계투자-----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제29조(업무방법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의 방법 및 기간과 제33조·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2. 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

③ 한국기술금융이 기금의 부담으로 -----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업무방법서) 한국기술금융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부담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술보증,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방법

나. 보증기간

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술보증 및 신용

<u>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u> <u>3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u> <u>4.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u> <u>5.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u> <u>6.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에 관한 사항</u> <u>7.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u> <u>8.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u>	<u>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u> <u>3.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u> <u>4.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u> <u>5.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u> <u>6.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재보증방법</u> <u>나. 재보증기간</u> <u>다. 재보증 제한업종</u> <u>라. 그 밖에 재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u> <u>7.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u> <u>가. 보증 대상 채무</u> <u>나. 유동화 대상 자산</u> <u>다. 위험관리방안</u> <u>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u> <u>마. 그 밖에 유동화회사보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u> <u>8. 신기술사업투자에 관한 사항</u> <u>9. 기술평가의 기준·절차·방법·종류 등에 관한 사항 및</u>
---	---

	<u>기술평가정보사업에 관한 사항</u> 10. <u>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u> 11. <u>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항</u> 12. <u>기술거래사업에 관한 사항</u> 13. <u>기업의 인수·합병 지원에 관한 사항</u> 14. <u>기술평가제도 및 기술보증 제도의 조사·연구·확산에 관한 사항</u> 15. <u>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u> 16. <u>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u> 17. <u>그 밖에 한국기술금융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u>
제30조(보증의 기준) ① <u>기금은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u>	제30조(보증의 기준) ① <u>한국기술금융은 기술사업역량, 사업화전망</u> ----- -----.
② <u>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u>한국기술금융은 기금으로 부담하는</u> ----- -----.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① <u>기금의 보증채무부담 및 재보증 총</u>	제31조(보증 등의 한도) ① <u>한국기술금융이 기금으로 부담할 수</u>

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 또는 재보증할 수 있는 보증채무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제32조(업무계획)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있는 보증채무 -----

-----.

② 한국기술금융이 기금의 부담으로 -----

-----.

③ 한국기술금융-----

----- 대하
여 기금의 부담으로 -----
-----.

제32조(업무계획) ① 한국기술금융-----
이사회-----

-----.

② 한국기술금융-----

-----.

③ 한국기술금융-----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받는다. 이 경우 기술보증을 받은 신기술사업자의 해당 사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그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기업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는다.

③ 기금은 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

제33조(보증료 등) ① 한국기술금융-----

---- 기술사업의 타당성, 신용도 -----.

② 한국기술금융-----

-----.

③ 한국기술금융-----

-----.

④ <u>기금</u>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④ <u>한국기술금융</u>----- ----- ----- -----.
제33조의2(수수료) <u>기금</u>은 제28조 제1항 제4호 · 제4호의2 · 제5호 · 제6호 ·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의2(수수료) <u>한국기술금융</u>은 제28조----- ----- ----- ----- -----.
제34조(손해금) <u>기금</u>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제34조(손해금) <u>한국기술금융</u>--- ----- ----- ----- ----- -----.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u>기금</u>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회사가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u>한국기술금융</u>----- ----- ----- ----- -----.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③ (생략)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7조(구상권의 행사) ①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기금의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

----- 한국기술금융 -----

-----.

② 한국기술금융-----

-----.

제37조(구상권의 행사) ① 한국기술금융-----
-----.

② 한국기술금융-----
----- 한국기술금융 -----
----- 한국기술금융 -----
-----.

③ 한국기술금융 - 한국기술금융 -----

예할 수 있다.

1. · 2. (생략)

④ 기금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
는 해당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
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
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
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
· 면제) ①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
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
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
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
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

-----.

1. · 2. (현행과 같음)

④ 한국기술금융-----

----- 한국기술금융-----

-----.

제3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한국
기술금융-----

-----.

1. ~ 3.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
· 면제) ① -----

----- 한국기술금융-----

-----.

② 한국기술금융-----

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38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39조(보증의 금지) 기금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제29조의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

③ -----

----- 한국기술금융-----.

제38조(채권자의 의무) -----

----- 한국기술금융-----.

1. ~ 5. (현행과 같음)

제39조(보증의 금지) 한국기술금융은-----

-----.

제39조의2(자금의 조달) ① 정부

<신 설> 제40조(회계원칙) ① (생 략) ② <u>기금의 기본재산</u>은 자본금으 로 회계처리한다. 제41조(회계연도) <u>기금의 회계연</u>	는 <u>한국기술금융의 운영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 연할 수 있고, 제28조에 따른 한 국기술금융의 업무 수행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 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제5호의 업무 추진 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같은 조 제2항의 계정에 출 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소관으로 한다.</u> ② <u>한국기술금융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u> 제40조(회계처리의 구분) <u>한국기 술금융은 한국기술금융의 회계, 기금의 회계 및 계정의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u> 제45조의6(기금의 회계) ① (현행 과 같음) ② <u>기본재산</u>----- -----. 제41조(회계연도) <u>한국기술금융-</u>
--	--

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예산)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예산을 변경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결산)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

제42조(예산과 결산) 한국기술금융의 예산과 결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기술금융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한국기

<u><신 설></u> 제44조(여유금의 운용) 기금의 기본재산 중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외의 <u>여유금</u>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기금의 <u>설립목적</u>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45조(결손보전) ①·② (생략)	<u>술금융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45조의8을 준용하되, 같은 조 제4호 중 “기금의 설치목적”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목적”으로 본다.</u> 제45조(손익금의 처리) ① 한국기술금융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기술금융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45조의8(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한국기술금융은 기금----- ----- <u>여유자금</u>-----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설치</u>----- ----- 제45조의9(기금의 결손보전) ①·
--	--

제4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기
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한
국기술금융은 한국기술금융 및
기금의 -----.

제4장 기술보증기금

제45조의3(기술보증기금의 설치)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
키고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
여 한국기술금융에 기술보증기
금을 설치한다.

제45조의5(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및 부대비
용
2.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업무(같은 항 제2호아
목의 업무는 제외한다)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를 위한 경비
4. 한국기술금융의 운영에 필요
한 비용
5. 한국기술금융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한국기술금융에 대한 출연

<신 설>

제4장 보칙

제46조(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

7.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45조의7(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한국기술금융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기술금융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감독) -----
---한국기술금융-----
-----.
--기금-----

하여 감독한다.

제47조(보고·검사)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 기금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또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환이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출연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②·③ (생략)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

제47조(보고·검사) ① -----
----- 한국기술금융의-----
----- 한
국기술금융, 한국기술금융-----

----- 보고서 등 자
료-----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업무의 위탁) ① 한국
기술금융-----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
금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
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
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에는 재판 외의 행위로 한정하
다.

제48조(배상책임 등) ① 기금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
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기금의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
는 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배상
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

----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따
로 정하는 자-----.

② -----
----- 한국기술
금융-----
-----.

-----.

제48조(배상책임 등) ① 한국기술
금융-----
-----한
국기술금융-----
-----한국기술금융-----

-----.

② 한국기술금융-----

한국기술금융-----

-----.

-----.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 한국기술금융이-----

<u>제1항제7호</u>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③ <u>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u>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⑤ (생략) <u>제5장 벌칙</u> 제52조(과태료) ① 제49조를 위반하여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u>1항제2호</u>라 목-----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u>한국기술금융은 제28조제1항제3호</u>아 목----- ----- -----. ④ ⑤ (현행과 같음) <u>제6장 벌칙</u> 제52조(과태료) ① ----- 위반하여 <u>한국기술금융</u>, ----- ----- ----- ---. ② (현행과 같음)
---	--